

#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영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권영희, 김정환, 이병도, 문장길,  
이광성, 이영실, 박순규, 정진술,  
채유미, 김광수, 송정빈, 채인묵,  
조상호 의원 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으로만 규정되어 서울시의 직접 수행, 보조금 지원 방식을 추가로 규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,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6조).
- 나.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(안 제7조).
- 다.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(안 제8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상생교류 협력사업)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의 발굴 및 모니터링
2.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·조사 및 정보의 집적·제공
3.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
4. 농수산물 유통,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
5.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
6. 지역의 관광, 특산물,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·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7. 기타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, 단체, 타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

- 제8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(이하 "운영자"라 한다)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</li> <li>2.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·조사 및 정보의 집적·제공</li> <li>3.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</li> <li>4. 농수산물 유통,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별 사업 추진 및 교육·훈련</li> <li>5. 지역 간 상생협력 세부사업 추진 관련 상담·자문</li> <li>6. 지역의 관광, 특산물,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·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 등</li> </ol>	<p>제6조(상생교류 협력사업)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의 발굴 및 모니터링</li> <li>2.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·조사 및 정보의 집적·제공</li> <li>3.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</li> <li>4. 농수산물 유통,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</li> <li>5.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</li> <li>6. 지역의 관광, 특산물,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·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</li> <li>7. 기타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/ol> <p>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, 단체, 타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
<p>제7조(운영자의 의무) ① 운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운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.</p>	<p>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상생 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</p>
<p>제8조(지도 감독)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	<p>제8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</p>